

1. 제안이유

현재 그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의 신고(안 제3조 신설)

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발행 폐지를 신고하는 서식을 정하고,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행 및 발행 폐지의 내용을 공개하는 서식을 정함

나.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작성(안 제4조 신설)

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에 관한 실적보고서 서식을 정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

행정안전부령 제 호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·판매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의 신고) ①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른 발행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지 신고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

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공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.

제4조(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작성) 영 제5조에 따른 보고서 작성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
지방자치단체	명칭				
	소재지			담당자 전화번호	
신청내용					
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별·금액별			발행예정 신청액		
종류	권면금액별		매수	금액(천원)	
지류형					
소계	-		-		
카드형	-		-		
모바일	-		-		
총계	-		-		
직전사업연도 판매액(A)		당해사업연도발행 예정금액 총계(B)		(B/A) 비율(%)	
직전사업연도 발행예정금액(A)		직전사업연도발행 예정금액중미발행액(B)		(B/A) 비율(%)	

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00사랑 상품권의 발행액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지방자치단체의 장 (서명 또는 인)

행정안전부장관 귀하

※ 구비서류 : 지역사랑상품권 견본(안), 지역사랑상품권발행 계획서 또는 직전 반기의

지역사랑상품권발행 실적보고서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0 - 3947

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폐지 신고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처리기간
지방자치단체	명칭		
	소재지		담당자 전화번호
발행폐지 연월일		년 월 일	
발행폐지 사유			

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00사랑 상품권의 폐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지방자치단체의 장

(서명 또는 인)

행정안전부장관 귀하

※ 구비서류 : 발행 폐지 후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의 보호방안을 적은 서류

지역사랑상품권 ☐ 발행 ☐ 폐지 공개서식

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
지방자치단체	명칭		
	소재지		담당자 전화번호
발행 및 폐지 연월일		년 월 일	
☐ 발행		☐ 폐지	
당해사업연도 발행예정금액		당해사업연도 발행금액	
직전사업연도까지 발행금액 총 누계액		직전사업연도까지 발행금액 총 누계액	
		발행폐지 사유	

공개일자

년 월 일

지방자치단체의 장

(서명 또는 인)

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실적 보고서

[illegible]

※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하는 각종 실적자료는 별도 제출